

칸트의 정언명법에 대한 명제적 해석*

맹 주 만 · 김 형 주

주제분류 윤리학, 도덕철학

주요어 칸트, 정언명법, 가언명법, 선험적 종합명제, 분석명제, 종합명제, 실천적 인식, 의지의 자율성, 선의지, 자유의 이념

요약문

이 글은 칸트의 정언명법에 대한 명제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는 정언명법에 대한 종래의 해석을 칸트의 본래의 의도에 따라서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칸트는 만일 어떤 학문이 그에 적합한 자격과 칭호를 부여받으려면, 그에 해당하는 지식들은 단순한 논리적 필연성만이 아닌 현실 세계에 대해서도 보편타당성과 필연성을 갖는 선험적 종합명제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덕형이상학을 수학과 자연과학 이상으로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으려했던 칸트에게 정언명법은 그 같은 야심찬 기획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칸트는 이 정언명법이 선험적 종합명제임을 보일 수 있다면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일 정언명법이 선험적 종합명제라면 그것은 그 명제적 특성상 주어와 술어의 결합이 보편타당성과 필연성을 가져야 한다. 칸트가 제시한 정언명법의 정식들은 그것들이 선험적 종합명제라는 것을 보이려는 실험의 산물이다. 또한 칸트는 이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종합의 원리를 자유의 이념을 전제로 한 의지의 자율성에서 발견한다. 필자는 유한한 ‘인간의 선의지’에는 의지의 자율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칸트는 이런 종합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적 도덕 의식에서 발견되는 도덕성의 원리로서의 선의지에 대한 학적 인식을 명료히 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지의 자율성과 선의지 모두를 고려한 종합을 통해서만 주어와 술어의 필연적 결합을 보이려는 칸트의 증명(연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칸트의 의도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증명은 내재적 정당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판단

* 이 논문은 2007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철학탐구 제25집

의 객관성과 필연성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현실 세계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의 선험적 종합명제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해석을 허용할 소지도 있다. 역으로 이 같은 추론은 우리가 칸트의 도덕이론을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데, 만일 그 가능성에 대한 해명이 칸트의 도덕철학의 근간을 해치지 않고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칸트식의 의무론자들이 자신들에 가해지는 비판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1. 들어가는 글 : 실천적 인식에서의 선험적 종합명제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재판(1787)의 서론(Einleitung)에서 자신의 비판철학이 겨냥하고 있는 목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순수이성(비판)의 핵심 과제를 “선험적 종합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Wie sind synthetische Urteile a priori möglich?)라는 물음으로 설정했다.¹⁾ 이 과제 설정에는 이미 선험적 종합 판단(명제)²⁾이 가능하다는 선편단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칸트는 “선험적 종합판단은 가능한가?”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선험적 종합판단은 가능한가?’라고 묻는다.³⁾ 이는 칸트가 선험적 종합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로서 선험적 종합판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선험적 종합판단의 존재와 그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때문에 칸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선험적 종합판단의 증명(연역)의 성공 여부에 놓이게 된다. 『순수이성비판』의 초판(1781)에서 시도된 ‘범주의 선험적 연역’이 재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오랜 기간 구상해온 자신의 이성비판의 과제 규정을 “이성 능력 일반의 원천 및 범위와 한계의 규정”(KrV, AXII)⁴⁾

1) 이 글에서는 칸트 철학의 전문 용어들 중 하나인 a priori와 transzendental을 각각 ‘선험적’과 ‘선험론적’으로 번역한다. 다만 표현상의 간결을 기하고 또 종래의 한국어 표현을 고려해서 선험론(적) 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의 경우에 한해서는 ‘선험철학’으로 옮긴다. 칸트의 철학에서 a priori와 transzendental이 갖는 밀접한 연관을 고려할 때, 큰 무리가 뒤따르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2) 칸트에게 명제는 판단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개념이다.

3)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서 ‘실천이성의 사실’』,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p. 37.

4) 본 논문에 인용되는 칸트의 저술은 Werkausgabe in zwölf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8이다. 『순수이성비판』은 초판(1781)은 A, 재판(1787)은 B로 표기하는 관례를 따랐다. 이하에서는 칸트의 저서 인용을 다음의 약어와 쪽수를 표시해서 본문에 직접 표시한다. *Kritik der reinen Vernunft*(=KrV),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Gr.), *Kritik der*

으로 설정하고 있는 칸트에게 선험적 종합명제의 가능성의 증명은 동일한 목표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이 목표가 의도하는 최종 목적은 도덕형이상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의 정초에 있다.

칸트가 선험적 종합명제의 가능성을 비판철학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 이유는 개념에 의한 이성 인식의 체계, 즉 단적으로 학문(Wissenschaft)은 그것이 내세우는 지식이 보편타당성과 필연성을 지닌 진술이어야 하며, 그 진술은 선험적 종합명제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곧 형이상학이 학문으로서의 자격을 지니려면 형이상학적 진술들 역시 선험적 종합명제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정초하려는 『순수이성비판』의 목표와 시도는 이 같은 문제의식과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 근거의 해명’과 ‘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의 정초’라는 비판철학적 계획은 다시 1) 순수수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2) 순수자연과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3) 자연소질로서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4)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설정된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과제 해명의 최종 종착지는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이 이론이성의 능력으로서의 불가능하다는 결론, 즉 사변형이상학의 불가능성이었다. 이는 곧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의 가능성은 이론이성에 의한 이론적 인식이 아니라 실천이성에 의한 실천적 인식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칸트에 의해서 최초로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명칭으로 정립된 도덕형이상학이었다. 그리고 칸트는 그 과제를 『도덕형이상학 정초』(이하 『정초』)에서는 “정언명법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과제로 설정하고, 이것을 “실천적 인식에서 선험적 종합명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칸트는 학문으로서의 도덕형이상학을 정초하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실천적 인식에서의 선험적 종합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며,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와 같은 인과성

praktischen Vernunft(=KpV), Kritik der Urteilskraft(=KU).

의 원리가 이론적 인식에서의 선험적 종합명제인 것처럼 실천적 인식에서의 그와 같은 명제적 성격과 특징을 정언명법으로 차별화해서 부르고 있다.

칸트는 『정초』에서 그 스스로 선험적 종합명제로서의 정언명법의 다양한 정식들을 제시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논증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결론적으로 ‘정언명법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 아래서 정언명법이 실천적으로 선험적 종합명제라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정언명법(들)은 다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즉, 자유의 이념은 나를 예지계(intelligibelen Welt)의 성원으로 만들어 주며, 이에 의해서 내가 그 성원으로 존재하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의지의 자율성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나 자신을 감성계의 성원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는 의지의 자율성에 적합해야만 하는데, 이 **정언적 당위**는 하나의 선험적 종합명제로 드러난다(vorstellen).⁵⁾ 그 이유는 감성적 욕망에 의해 촉발된 나의 의지에는 동일한 의지이지만 오성계(Verstandeswelt)에 속하면서 순수하고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인 의지의 이념도 함께 하는데, 이 실천적 의지는 이성에 따라 감성적 욕망에 의해 촉발된 의지의 최상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체로 감성계의 직관에 법칙적 형식 일반을 의미하는 지성(Verstand) 개념이 더해져서 모든 자연 인식이 기인하는 선험적 종합명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다.”(Gr., 90)(이하에서는 이를 ‘정언명법의 가능성 명제’ 또는 ‘명제’로 줄여 표현함.) 그런데 칸트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입에서 “정언명법 또는 도덕성의 법칙에서(그 가능성을 통찰하는) 난점들이 있는 이유는 아주 많다. 정언명법은 하나의 선험적인 종합적-실천적 명제이며, 이론적 인식에서 이러한 종류의 명제들의 가능성을 통찰하는 것이 매우 많은 난점들을 안고 있듯이, 실천적 인식에서도 덜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Gr.,

5) 이 글에서는 vorstellen을 표상한다, 생각한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등으로 문맥의 의미에 따라 달리 사용하였다.

50)고 적고 있다. 이 같은 예상되는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정언명법의 개념으로 그 명법에 해당하는 어떤 정식들이 나올지 시험해보려 한다.”면서 “그 정식들에는 오직 정언명법일 수밖에 없는 명제들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Gr., 50) 이에 따르면, 칸트의 유명한 정언명법의 정식들은 분명 ‘실천적으로 선형적인 종합명제’의 표현으로서 정언명법은 선형적 종합명제로 표현되는 진술들의 총체에 대한 규정이다.

정언명법이 선형적 종합명제임을 보이려는 칸트의 시도는 이론적 인식에서처럼 주어와 술어의 선형적 종합, 즉 주어와 이 주어 개념 안에는 없는 술어의 필연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 종합의 원리로서의 제 3의 개념이 필요하다. 칸트는 이 개념을 ‘명제’에 언급되어 있듯이 “자유의 이념”을 전제로 한 “의지의 자율성”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주어는 나(이성적 존재자 내지는 행위자)의 “의지”이며, 술어는 나의 모든 행위에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의지의 강제)이다. 다시 말해서 선형적 종합명제는 그것이 ‘선형적이기에’ 예지계의 성원으로서의 나의 의지는 감성적 욕망으로부터 독립해 있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의지이기도 한 의지의 자율성(도덕법칙)에 의해서 규정되며, 동시에 그것이 ‘종합적이기에’ 감성계의 성원으로서의 나의 모든 행위가 언제나 이 의지의 자율성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의지의 강제)으로 나타난다는 정언적 당위의 표현이다. 필자가 이해하는 한, 이 같은 칸트의 해명 전체는 당위를 명령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선의지에 함축되어 있는 도덕적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해명, 즉 일상적 도덕의식에서 발견되는 선의지에 대한 학적 인식(의 정당화)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해석의 단초는 칸트가 선의지의 명제적 구체화 자체를 선형적 종합으로서의 정언명법(의 정식들)으로 간주하는 대목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이 선의지에는 의지의 자율성(도덕법칙)이 전제(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의지의 자율성은 선의지의 도덕성을 규정하는 원천이라는 점에서 선형적 종합의 최고 원리이며, 이것이 유한한 인간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 곧 선의지인 것이다. 필자의 이 같은 해석이 의미 하듯이 칸트가 시도하는 실천적인 선형적 종합명제의 증명의 핵심 과제

는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의지는 정언명법에 종속하는데, 그런 의지는 선의지이며, 그 원리는 의지의 자율성이다.’는 것을 보이는 작업이다. 이 과제에는 직간접으로 자율성(선의지), 의무, 이성, 경향성(욕망) 등과 같은 칸트의 도덕철학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다 들어 있다. 이런 점에서, 페이튼이 지적하듯이, “의무를 직접적으로 또는 아무 매개체도 없이 이성적 의지의 개념과 연결시킨다는 점이 역설적이다.”⁶⁾라는 지적은 의지의 자율성과 선의지의 관계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평가이다. 이하에서는 칸트가 이 같은 과제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이다.

2. 명령의 명제적 표현으로서의 명법

『정초』에서 도덕의 문제를 선의지와 의무와 같은 일상적 도덕의식 그리고 이 모두의 가능 원천이요 근거인 실천이성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한 다음,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 가능한 도덕형이상학의 정초의 시금석이 되는 선험적 종합명제를 실천적 인식의 차원에서 다루려고 할 때, 칸트가 도입한 최초의 개념은 명법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실천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의 정립에 있다.⁷⁾ 칸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객관적 원칙에 대한 표상[생각]은, 그것이 이 원칙을 표상[생각]하는 의지를 강제하는 한, (이성의) 명령이며, 그 명령의 정식은 명법이다.”(*Gr.*, 41) 칸트는 여기서 이성적 존재자에게만 가능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명령(*Gebot*), 즉 이성의 명령과 구분해서 그 정식(*Formel*)을 명법(*Imperativ*)이라고 부른다. 또한 “모든 명법은 당위(*Sollen*)로 표현되고, 그럼으로써 이성의 객관적 법칙과 의지의 관계를 나타낸다.”(*Gr.*, 42) 달리 말해서 칸트의 명법이라는 개념은 의지를 강제하는 명령들이 의지와 관계 맺고 있는 형식에 대한 명칭이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이미 의지와 명령의 관계, 즉 선험적

6) H. J. 페이튼, 『칸트의 도덕철학』, 서광사, 1988, p. 181.

7) Allen W. Wood, *Kant's Eth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70.

종합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한 마디로 명법은 명령과 명제라는 두 특성을 하나로 담아내고 있는 용어로서, 칸트가 명법이라는 말을 도입한 것은 학문으로서의 윤리학(도덕형이상학)의 정초를 가늠하게 될 도덕성의 최고원리인 정언명법의 문제를 그것이 지닌 명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명해야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 인식에서의 명제(Satz)가 갖는 판단의 언어적 표현과 같은 의미이면서 실천적 인식에서의 (당위적) 명제(판단)가 지녀할 특징을 명법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명법은 명령과 관련한 객관적 원칙 내지는 법칙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자에게만 가능한 현상을 적시하고 있다. 칸트는 이 개념을 일상적 도덕의식 혹은 대중적 철학으로부터 출발해서 도덕성의 최상 원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서는 초입에서 도입하고 있다. 바로 명법은 법칙과 의지(이성) 및 행위 주체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명법의 도입 단계까지의 칸트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에 선행하는 부분, 즉 『정초』 본론의 제1장의 선의지에 관한 언급과 의무와 관한 제2장의 초입부를 지나 명법의 도입부까지의 메시지는 ‘의무이기 때문에’(aus Pflicht) 하는 행위의 필연성이 선의지를 지닌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특징짓는 근본 원리라는 것이었다.(Gr., 18-41) 그 같은 주장의 단적인 표현이 명법의 도입부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이성(실천이성, 선의지, 의무)과 경향성이라는 두 주인의 지배를 받는 인간 의지의 처지에 대한 묘사인데,⁸⁾ 여기에는 이미 인간의 의지에 주어지고 또 인간이 따라야

8)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이면서도 인간의 의지(이성)는 완전히 선택하지는 않다. 즉, 욕구와 경향성의 지배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의지는 자신의 이성(의지)의 요구를 필연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향을 가지며, 따라서 이성의 법칙(도덕법칙)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위를 결정하도록 만든다. 이런 이유에서 만일 인간이 경향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성의 법칙에만 따르는 의지의 결정을 내리려 할 경우, 이성은 경향성의 욕구를 물리쳐야 한다는 점에서 그때의 이성의 법칙은 이미 이성의 명령 또는 의지의 강제로 인식된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이런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 경향성의 욕구를 따르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선택된 행위인지를 (아직) 모르거

만 하는 명령의 강제성과 행위의 필연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Gr., 41) 그리고 정언명법 개념은 그 같은 인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결정판이다.

3. 가언명법과 정언명법

칸트는 명법 일반을 가언명법과 정언명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조건적 명령 일반, 후자는 무조건적 명령 일반에 대한 명제적 형식 규정이다. 칸트는 이 같은 구분에 앞서 먼저 명법이 인간과 같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유한한 존재자에게만 적용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객관적 법칙과 의지와 의 관계에서 명법이 적용되는 존재자와 적용되지 않는 존재자를 구분한다. 전자는 신의 의지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신성한 의지, 즉 완전한 선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지인데, 이런 의지에는 객관적 법칙에 따르기 위해서 강제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는 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능히 자신의 주관적 소질에 따라서 스스로 객관적 법칙에 따르는 행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인간과 같은 경향성이라는 감성적 제약 아래 있는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지는 그들이 객관적 법칙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행위하려는 실천적 의지도 동시에 가져야 하며, 자기 강제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명법이란 주관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인간과 같은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객관적 법칙과 맺게 되는 관계를 표현하는 정식”, 또는 “어떤 종류이든 선의지의 원칙에 따르는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임을 나타낸다.(Gr., 43)

먼저 가언명법은 어떤 행위를 하려는 필연적 이유가 그 행위를 통해

나 혹은 알면서도 다른 동기나 이유에 이끌려서 다른 선택을 하거나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명령들을 분류하고, 이로부터 정언명법을 도입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가 명법의 구분이다.

달성하려고 하는 다른 행위를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에 수단으로만 선할 경우, 그 명법은 가언적이다. 반면에 정언명법은 조건적인 가언명법과 달리 어떤 행위가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또한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하다고 생각되는 행위, 따라서 필연적으로 그 자체가 이성에 따르는 의지, 즉 그러한 의지의 원칙으로 생각될 경우, 그 명법은 정언적이다. 또한 가언명법은 행위 주체의 의도와 관련해서 그 의도가 가능적일 경우에는 개언적(problematisch) 실천원칙이며, 그 의도가 현실적일 경우에는 확언적(assertorisch) 실천원칙이다. 반면에 정언명법은 그 행위가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즉 다른 목적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객관적 필연적인 경우에는 필증적(apodiktisch) 실천원칙 즉 칸트의 고유한 의미에서 실천법칙이다. 그리고 가언명법은 다시 숙달(Geschicklichkeit)의 명법과 영리함(Klugheit)의 명법으로 구분된다.(Gr., 43-44)

그러나 칸트의 명법 구분의 실제 단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때마다 세부 내용과 표현이 달라지는데, 이를 통해 칸트가 명법을 도입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절차적으로 칸트의 명법에 대한 설명은 최종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령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언명법뿐이라는 진술에 이르게 되며, 이는 결국 모든 논의의 전개 과정이 선형적으로 종합적 실천명제로서의 정언명법이 지닌 명제적 특성을 분명히 해놓으려는 데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에서는 명법을 가언명법과 정언명법을 구분하면서 가언명법을 다시 숙달의 명법과 영리함의 명법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한편, 정언명법은 도덕성의 명법이라 부르고, 다음으로 두 번째 방식에서는 이 각각을 다시 숙달의 규칙, 영리함의 충고, (진정한 명령으로서의) 도덕성의 명령(법칙)이라 부르고 있다. 이 두 방식의 차이는 전자가 의지적 행위자가 달성하려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의지를 강제하는 방식 자체의 다름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 차이 역시 그것이 목적과 수단 또는 강제

방식이든 최종적으로는 행위를 의도하는 행위자의 의지가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느냐로 귀착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의지와 의지의 규정근거 양자의 결합 방식의 차이, 결국 의지 개념에 대한 칸트의 고유한 이해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칸트는 욕망능력 중 이성적 부분에 해당하는 두 동인(動因)을 선택의 지(Willkür)와 의지(Wille)로 구분한다. 선택의지의 근본특징은 “이성적 선택능력(Dezisionsvermögen)”인데, 칸트는 이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지(freie Willkür; liberum arbitrium)라 하여 동물의 선택의지(trierische Willkür; arbitrium brutum)와 구분하며, 또 이 단순한 선택능력을 넘어서 충동이나 경향성의 영향에 저항하면서 오로지 이성적인 목적선택과 목적 추구의 능력을 갖는 욕망을 의지라고 하여 하나의 의지를 두 가지 동인에서 구분한다.⁹⁾ 이는 곧 선택의지를 규정하는 근거가 칸트에 고유한 (도덕적) 의지 자신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동물의 선택의지는 다만 충동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욕망능력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의지라 부를 수 없으며, 반면에 감각적 충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의지만이 진정으로 “의지”(Wille)라 할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칸트가 말하는 선택의지는 (동물과 구분되는 ‘선택’의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선택능력을 갖지만, 이때의 의지는 감각적 충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의지이다. 그리고 의지의 또 다른 동인인 “대상을 선택하는 능력”¹¹⁾으로서 선택의지가 오로지 의지 자신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립된 도덕법칙에 따르도록 선택의지를 규정하는 의지의 근거요 능력의 원천이 의지(실천이성)이다. 이 의지야말로 칸트 철학에 고유한 “실천이성으로서의 의지, 즉 입법적 의지”¹²⁾이다.

9) Christoph Horn, “Wille, Willensbestimmung, Begehrungsvermögen,” *Immanuel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O. Höffe (hrsg.), Berlin: Akademie Verlag, 2002, p. 52-53.

10) Allen W. Wood, *Kant's Ethical Thought*, p. 51.

11)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 178.

따라서 명법과 관련해서 인간의 선택의지는 그 자신이기도 한 모든 감각적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규정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지에 따라 가언적인지 정언적인지가 구분된다.

이처럼 칸트가 가언명법의 경우에 명법을 규칙이나 충고로 달리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명령이 의지와 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으로 ‘도덕적’이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다. 즉, 도덕적 명법이란 의지가 다른 목적을 전제함이 없이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 규정되는 무조건적, 객관적, 그리고 보편적 필연성을 지니는 것이며, 이는 곧 경향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따라야만 하는 법칙이다. 하지만 숙달의 명법과 영리함의 명법은 각 사람마다 달성하려는 목적과 각자가 생각하는 자기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요구되는 필연성은 객관적 필연성을 갖지 못하며, 의지를 강제하는 방식 또는 관련된 의지가 그저 주관적이고 우연적일 뿐이다. 반대로 정언명법은 실천적으로 어떤 조건의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 필연적으로 의지를 강제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명령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칸트는 숙달의 명법이 갖는 규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이를 (기예에 속하는) 기술적, 영리함의 경우에는 (복지에 속하는) 실용적, 도덕성의 명령은 (자유로운 행동 일반, 즉 도덕에 속하는) 도덕적이라 부른다.(Gr., 46) 이 같은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칸트가 ‘도덕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행위가 도덕적이라면, 그것은 객관적 필연성을 갖는 정언적인 명령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4. 분석명제, 종합명제, 선험적 종합명제

상술한 명법의 구분과 그 각각이 의지와 관계하는 방식을 특징지은 다음, 칸트는 본격적으로 “모든 명법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물으면서,

12)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p. 202.

이 물어지고 있는 과제의 핵심 문제를 “명법이 명령한 행위의 실행이 아니라 의지의 강제가 어떻게 생각될 수 있는가?”(*Gr.*, 46)로 설정한다. 즉, 행위의 실행 가능성이 아니라 강제 가능성을 문제 삼는 이 과제적 물음의 핵심적 의미는 명령이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물음의 본격적 탐구를 위해 각 명법에 대한 명제적 해석에 착수한다.

칸트는 명법의 가능 근거와 이유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맨 먼저 속달의 명법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특별히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칸트에 의하면, 우선 속달의 명법은 “우리에게 가능한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의 가능한 방법에 대한 명법”(*Gr.*, 44)인데, 이 명법은 분석명제이다. 그 이유는 어떤 한 행위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성적이며 선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가 문제일 경우, 그것을 완벽하게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법은 그 행위자의 의도(목적)에 이미 분석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능한 의도나 목적은 무수히 많으며, 따라서 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의 선택 또한 그 의도에 따라 무수히 많게 되는데, 이를 표현하는 모든 명법들은 분석적 실천명제들이다. 이 속달의 명법의 특징은 단 하나의 정해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제각기 다양하게 (이성적이며 선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단의 선택 역시 달라지만, 공통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명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을 위한 행위든 암살자의 행위든 각기 그에 가장 적합한 지시를 행위의 원칙으로 삼으면 된다. 이 역시 원칙적으로 의지와 의 관계에 기초한 명제의 해명인데, 이때의 의지는 의지가 (객관적 필연성을 갖지 못하는) 다른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필연적 수단 또한 다만 그러한 목적에 분석적으로 종속한다. 반면에 같은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들 중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이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을 하려는 의지와 수단으로

서의 운동 자체는 건강에 분석적으로 속해 있지만, 건강을 실현하는 운동 수단으로서 등산을 할지 수영을 할지는 종합적, 즉 경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의지의 활동을 실현하는 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실현하는 근거에 관한 것이다.”(*Gr.*, 47)

숙달의 명법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게 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한 사람의 가능한 목적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영리함의 명법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라면 누구나 실제로 추구하게 된다고 선형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한 가지 목적”을 전제로 한다. 칸트는 이 목적을 행복 내지는 행복해지려는 의도로 상징한다. 그리고 이 행복 추구하고 관련된 명법을 영리함의 명법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명법이 숙달의 명법과 비교해서 유일한 차이는 전자에는 이미 자기 행복이라는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점뿐이다. 칸트는 이런 점을 들어 영리함을 숙달의 가장 좁은 의미로서의 ‘영리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영리함의 명법은 종합명제다. 칸트는 만일 행복이 무엇인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면, 이는 숙달의 명법과 동일한 분석명제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다. 즉, 행복해지려는 의도에 있어서 이 행복 촉진 내지 달성의 수단은 행복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행복 개념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무엇이 행복인지 또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스스로도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영리함의 명법 역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숙달의 명법과 다를 바가 없다.

행복 개념의 불확실성은 영리함의 명법이 왜 그렇게 불릴 수 있는지, 또 왜 종합명제일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칸트에게 “행복은 우리의 모든 경향성의 만족이다.”(*KrV*, B834/A806) 그리고 “행복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자신의 본능에서 추상해낸, 따라서 그 자신 안에 있는 동물성으로부터 이끌어낸 개념이 아니라, 단지 경험적 조건들 아래서 그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상태에 대한 이념에 불과하다. 인간은 상상

력 및 감관에 연루되어 있는 지성에 의해서 매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이념을 자기 스스로 입안한다.”(KU, 338) 따라서 행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명령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행복은 이성이 갖는 이상(Ideal)이 아니라 단지 경험적 근거에서 기인하는 상상력이 갖는 이상이다.”(Gr., 48) 그러므로 행복은 이성에 의해서 추구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험적 요소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념의 내용 규정 즉 행복의 개념 규정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한 개인에 있어서도 자주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¹³⁾(Gr., 48) 결국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보편적·필연적 원리, (실천)법칙에 따르는 행위일 수 없다. 이 때문에 칸트는 가언명법 전체를 비록 그것이 명법의 형식을 지니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적 명령도 실천법칙도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언명법은 객관적 필연성을 갖는 무조건적 명령이기 때문에 가언명법처럼 개인의 욕망이나 경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이거나 우연적 내지는 경험적 성격을 갖는 의도(목적)에 제약되지 않으며, 또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 행위를 명령하는 것도 아니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가 갖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오직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Gesetz)에 대한 표상에 따라서 행위하는 능력, 즉 원칙(Prinzip)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이 의지이다.”(Gr., 41) 여기서 “법칙에 대한 표상”과 “원칙”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상(Vorstellung)은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원칙은 이미 그 안에 법칙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데, 만일 그러한 원칙이 형식적으로 가언명법처럼 법칙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주관적이면서 우연적인 조건을 지닌 것이라면 법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의 원칙 즉 의지를 강제하는 원칙이 법칙이 되려면 그 원칙은 객관적이면서 필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칙은 기본적으로 의지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도가 갖는 우연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행위자가

13) 칸트의 행복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맹주만,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과 도덕적 문화론」, 『칸트연구』 제11집, 한국칸트학회, 2003, pp. 86-91.

그 의도를 포기할 경우, 언제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 즉 행위를 명령하는 조건이 의지를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필연성”을 지녀야 한다.(Gr., 50) 이 같은 행위의 필연성은 명령을 거부하거나 반대되는 행위를 원한다고 해서 그 명령이 지니는 요구 자체가 제거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칸트적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는 법칙으로서의 명법은 정언명법뿐이다. 이 같은 제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정언명법의 형식적 특징들은 객관성, 보편타당성, 필연성, 구속력(강제력) 등이다. 그런데 이 같은 명제적 특성들 중에서 만일 정언명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령이라는 특성, 즉 의지를 강제하는 법칙적(정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 이 명법은 가언명법 또는 분석명제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정언명법이 선형적 종합명제(또는 선형적인 종합적 실천명제)인 것은 곧 의지를 강제하는 법칙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나타내는(표현하는) 명령(진술)이 선형적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남은 문제는 분석적이기도 경험적이기도 않은 선형적 종합명제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보이는 일이다.

5. 선형적 종합과 정언명법의 정당화

1) 선형적 종합명제로서의 정언명법의 정식들

칸트는 『정초』에서 선형적 종합명제인 정언명법의 몇 가지 정식들을 제시하는데,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드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 각각을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인격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로 부를 수 있다.¹⁴⁾ 그러나 해석자에 따라서 네 개

14) B. Aune, *Kant's Theory of Morals*, Princeton/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36.; W. O. Döring, *Das Lebenswerk Immanuel Kants*, Hamburg: Hamburger Kulturverlag, 1947, p. 109. 우드 또한 이 각각을 보편법칙의 정식,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성의 정식, 자율성의 정식으로 부르며, 그 각각에 포함되는 다른 변형 정식들도 제시하고 있다. Allen W. Wood, *Kant's Ethical Thought*. 특

또는 다섯 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⁵⁾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칸트의 정언명법의 세 가지 정식을 포함한 어떤 정식도 선험적 종합 명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표성을 갖는 세 가지 정식들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천적 인식에서의 선험적 종합명제의 증명이 어떻게 결과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선 칸트 스스로 이성적 존재자의 ‘유일한 정언명법’으로 들고 있는 첫 번째 정식은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동시에 내가 의욕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Gr.*, 51), 두 번째 정식은 “너는 인간성을 너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결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Gr.*, 61), 그리고 세 번째 정식은 “너의 의지가 자신의 준칙을 통하여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편법칙을 세우는 존재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Gr.*, 67) 또는 그 변형된 형식으로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히 xx-xxi.

15) 가령 앞의 Aune과 Wood를 포함해서 가이어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페이튼은 상이한 다섯 개의 정식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이어가 세 개의 정식에다 하나 더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율성의 원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목적의 왕국의 원리”를 독립적으로 상정하려는 데에서 생긴다. 또 가이어는 페이튼의 다섯 가지 정식들 중에서 “자연법칙의 정식”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스트래튼-레이크의 논증에 따라 칸트가 자연법칙의 정식을 제시한 것은 다만 “어떤 법칙의 보편화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때 그 적용 가능성의 조건 또는 ‘전형’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 또 설리번은 칸트의 실천철학 일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그 정식들을 (1) 자율성의 정식 또는 보편법칙의 정식, (2)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의 정식, (3) 도덕적 공동체를 위한 입법의 정식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P. Guyer, “The Possibility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in *The Philosophical Review* 104, No. 3, 1995, 353-6 쪽.;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A Study in Kant's Moral Philosop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칸트의 도덕철학』, 김성호 옮김, 서광사, 1988.); P. Stratton-Lake, “Formulating Categorical Imperatives”, *Kant-Studien* 84, 1993, pp. 316-340. 특히 322-323.; P. Guyer, “The Possibility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p. 355 각주 3.; B. Aune, *Kant's Theory of Morals*, pp. 111-116. R. J. Sullivan, *An introduction to Kant's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29, pp. 46-64.

언제나 그의 준칙을 통하여 보편적인 목적의 왕국에서 한 사람의 입법하는 성원인 것처럼 행위해야 한다.”(Gr., 72) 등이다.

첫 번째 정언명법은 도덕성의 최고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의무 개념으로부터 전진적인 분석 결과 도달한 가장 기본적인 정식이다. 왜냐하면 의무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행위의 준칙을 가져다주며, 또 그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하게 행사될 것을 필연적으로 의욕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준칙이 법칙이 되도록 의욕하고, 그 명령의 의지에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 같은 명령 자체가 객관적 필연성을 지녀야 하며, 또 그것을 요구받는 존재자가 이미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지녀야 한다. 즉, 의무의 자발적 수용과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만일 의무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경향성에 좌우되는 경험적인 성격의 것이며, 따라서 도덕적 의무란 상대적·우연적인 행위의 규칙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의무의 정식’은 그 자신 안에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해야 하는 필연적 법칙을 의욕할 것을 함축하고 있다. 칸트는 이 필연적 법칙(도덕법칙)을 의욕하는 능력을 의지의 자율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행위의 필연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무에만 기초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의무는 타율적으로 나의 본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적인 강제나 억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런 제약이 사라진다면 동시에 의무 또한 그 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무로부터 정언명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자율성에 따르려고 하는 선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같은 말지만, 의무는 선의지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에 의무의 명법이 가능할 수 있다. 단순히 의지의 자율성(도덕법칙)이 제 스스로 자기 의지를 규정한다는 것만으로 정언적 당위로서의 명령(의지의 강제)이 성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성계의 일원이기도 한 존재의 의지, 즉 선의지가 있어서 명령을 명령으로 인식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위해야만 한다고(의무라고) 인식하는 주체가 존재해야

만 한다. 만일 이 선의지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경험이 유의미하다면, 이 선의지는 의지의 자율성을 전제하고서야 가능한 현상이다. 칸트 스스로도 『정초』의 초반부(1장)에서 의무 개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선의지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의무 개념을 다루려고 한다.”(*Gr.*, 22)라고 밝히고 있듯이, 의지의 자율성과 의무는 선의지의 개념적 명료화의 산물이며, 이는 의지가 갖는 두 측면, 즉 자율성과 의무라는 두 요소에 대한 선험적-도덕형이상학적 해명이라 할 수 있다. 칸트에 의하면 단적으로 “의지의 자율성은 모든 도덕법칙과 이에 상응하는 의무의 유일한 원리이다.”(*KpV*, 144) 우리가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또 이에 일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율성과 선의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명법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이 보편성(보편법칙)의 정식이든 인격성의 정식이든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의지를 포함하는 의지의 자율성이 종합의 원리로서 전제되어야만 한다.¹⁶⁾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준칙은 행위의 도덕적 원칙으로서 그 자체가 선험적 종합명제이다. 이 첫 번째 정식은 의지의 자율성을 전제로 해서 감성적 욕망(자연 필연성에 따르는 경향성이나 성벽)의 의지에 저항해서 의무에 따른 행위를 선택하려 하는 의지(선의지 또는 실천적 의지)의 준칙이 보편타당성과 객관적 필연성을 갖는 법칙에 종속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정식이며, 따라서 어떤 의지가 도덕적 행위를 낳으려면 그 의지는 정언명법에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선험적 종합명제의 표현이다.

두 번째 정식은 이 ‘의무의 정식’에 함축되어 있는 자율성에 기초한 의지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정식에서 ‘인간성’이라는 개념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Gr., 62)의 의미를 갖는다. 칸트는 이 목적 개념도 자율성 개념에서 이끌어낸다. 칸

16) 선의지가 칸트의 도덕철학의 요체이며, 그것이 의지의 자율성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맹주만, 칸트와 선의지, 『철학탐구』 제17집, 중앙철학연구소, 2005.

트에 의하면, 의지의 자율성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따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능력”, 그것도 “이성적 존재자에게서만 발견되는 능력”이며,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와 모든 의욕에 대해서 타당하고 필연적인 원리 즉 실천법칙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의지의 자기 규정의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Gr., 59) 이 목적은 법칙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적 의도도 배제한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칸트는 이러한 목적 자체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존재자를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KpV, 59)라고 말한다. 그리고 특히 이성을 결하고 있어 수단으로서의 상대적 가치만을 갖는 ‘사물’과 달리 상대적 목적이나 수단적 가치를 초래하는 모든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자를 ‘인격’이라 규정한다.(KpV, 60) 그러므로 인격적 존재자만이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의지의 법칙이 명령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인격적 존재자의 인격성을 “전 자연의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자유이자 독립이며 동시에 독특한 법칙 즉 자기 자신의 이성이 부여한 순수한 실천법칙에 복종하는 존재자의 능력”으로 간주한다.(KpV, 210) 칸트는 인격을 이러한 본성의 소유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인격이든 인격성 내지는 인간성이든 다 같이 목적 그 자체일 수가 있다.

이처럼 칸트에 있어서는 자기 목적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본질적으로 인격일 수 있다.¹⁷⁾ 이 같은 칸트의 목적 개념의 규정은 첫 번째 및 세 번째 정칙 그리고 ‘정언명법의 가능한 명제’에서 정언명법이 선험적 종합 명제이기 위한 중요한 규정, 즉 예지계와 감성계의 결합 및 이 양자가 어떻게 종합되어야 하는지를 해명하고 있다. 칸트에 의하면, 이론적 인식 이든 실천적 인식이든 예지계는 감성계의 법칙과 원리를 규정하는 근거로서 존재한다. 즉, 지성(Verstand)과 이성(Vernunft)의 입법 능력처럼 양자의 종합은 언제나 하향적 종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지계의 성원으

17) K. Konhardt, *Die Einheit der Vernunft. Zum Verhältnis von theoretischer und praktischer Vernunft in der Philosophie Immanuel Kants*, Königsstein/Taunus, 1979, p. 250 이하.

로서 이성적인 자율적 존재자의 (도덕적) 의지가 감성적 욕망으로부터 촉발된 의지(즉, 경향성이나 성벽에 복종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면서 “동시에” 오직 인격이라는 목적 그 자체를 위해서 행위할 것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종합을 표현하고 있다.

이 두 번째 정식에 나타나 있듯이 인격성(인간성)은 도덕성 및 자율성과 더불어 칸트 사고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양자의 상호 관계에서 인격성 역시 의지의 자율성을 전제하 있다는 점에서 이 자율성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의 근거”¹⁸⁾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정식은 정언명법이 무조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즉 행위자의 의지가 가언명법처럼 개인 마다 다를 수 있는 목적이나 그 실현을 위한 수단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아야 하며, 정언적 명령에 따라야 할 의지 자체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선형적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명제이다.

세 번째 정식은 곧 의무를 위해서 행위하는 것은 스스로가 부과한 보편법칙에 따라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법칙을 부여하는 입법적 의지에 따르는 준칙이 보편법칙이 되도록 의욕하는 의지가 곧 칸트가 말하는 자율적 의지인데, 이 “의지의 자율성에 대한 행위의 관계, 즉 의지의 준칙을 통해 가능한 보편적 입법에 대한 행위의 관계가 곧 도덕성”이다.(*Gr.*, 73-74) 우리가 인간을 숭고하고 존엄한 존재자라 할 수 있는 것도 단지 도덕법칙에 복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의 입법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Gr.*, 74) 이러한 정언명법의 정식은 결국 첫 번째 정식의 기초로 전제되었던 자율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정식이야말로 자율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법칙의 형식과 내용을 통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의 원리’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식 또한 그 자체로 선형적 종합명제인 정언명법에 종속하는 의지 및 행위의 도덕성을 명제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르지 않다.

18) G. Krüger, *Philosophie und Moral in der kantischen Kritik*, Tübingen, 1967, p. 102.

2) 선험적 종합의 원리로서의 의지의 자율성, 그리고 선의지

이상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정식들은 무조건적 명령으로서의 정언명법을 정식화한 선험적 종합명제들인데, 이론적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명제에는 그 선험적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제3의 개념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선험적 종합의 원리라 부를 수 있다. 이 종합의 원리는 이미 상술한 ‘정언명법의 가능성 명제’에서 암시되어 있으며, 그것의 실제적 적용 또한 위의 세 가지 정식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천적·도덕적 자유로서의 의지의 자율성, 즉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법칙적으로) 규정하는 순수한 도덕적 의지(법칙)이다. 이런 의지는 결국 선의지의 의지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칸트에게 의지의 자율성과 선의지는 상호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지의 다른 표현이다. 만일 의지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선한 의지가 아니라면 도덕적 명령은 실행되지 않거나 그에 반할 수 있다. 칸트가 말하는 의지의 자율성은 그 자체가 도덕법칙의 원천이다. 이 법칙이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명령의 수행 주체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인데, 그 의지가 법칙의 명령에 따르는 의지가 아니라면 도덕적 행위는 불가능하거나 임의적인 선택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반대로 일상적 도덕의식에서 경험되는 선의지와 의무를 통해서만 정언적 당위의 법칙적 필연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해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의지가 전제하고 있는 의지의 자율성의 실체를 드러내려는 방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칸트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해명은 앞서 상술한 바 있는 ‘정언명법의 가능성 명제’, 즉 칸트가 정언명법에 대한 일련의 증명 과정을 종료하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명제’를 살펴보면, 정언명법이 선험적 종합명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들과 씨름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명제’는 우선 선험적 종합의 원리가 의지의 자율성이며, 이 자율성은 자유의 이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에 기초해서 선험적 종합은 ‘두 세계의 종합’과 ‘두 의지의 종합’으로 귀

결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의지가 자유라는 것 자체는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Gr., 91-92) 칸트는 『정초』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자유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단지 이성의 이념으로서 자유의 개념적 파악 불가능성, 이른바 실천철학의 한계를 밝히는데서 멈추고 있으며, 『실천이성비판』에서도 “자유는 도덕법칙의 존재근거이며, 도덕법칙은 자유의 인식근거이다.”(KpV, 108)하여 자유 개념에 대한 간접적인 증명에 머물고 있다. 칸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의지의 자율성을 설명하는 열쇠인 (의지의) 자유는 전제되어 있는 혹은 전제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다.(Gr., 81-83)

칸트는 자유의 실재성 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자유의 이념을 내세우고, 다시 자유의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을 구분한다. 후자의 적극적 자유가 곧 의지의 자유로서 실천적 의미에서의 의지의 자율성이다. 따라서 자유의 적극적 개념으로서의 의지의 자유와 의지의 자율성은 동일한 의미다. 다시 칸트는 이 의지의 자유를 직접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서 의지의 자율성을 다루고 있는데, 전자가 전제라면 후자 역시 이것 없이는 그 실재성과 객관적 필연성을 그 자체로는 증명할 수 없음은 동일하다.(Gr., 81, 84-85) 이런 한계 속에서 칸트는 선형적 종합의 원리로서의 의지의 자율성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제’에는 두 세계의 종합과 두 의지의 종합이라는 두 가지 종합이 제시되어 있다. 두 세계의 종합은 예지계(오성계)와 감성계의 문제이며, 두 의지의 종합은 자율적(실천적) 의지와 감성적 욕망(으로부터 촉발된 의지)의 문제다. 이 두 세계와 두 의지의 선형적 종합은 정언적 당위의 발생과 성립 및 수행 가능성에 있어서 이성과 경향성 양자의 상호 영향 관계의 종합인데, 이 종합의 핵심은 하나의 의지(의지의 자율성)가 다른 의지(경향성이나 성벽에 좌우되는 감성적 욕망으로부터 촉발된 의지)와는 전적으로 독립해 있으면서 이 의지를 규정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지는 그 자체가 이미 실천적 의지로서 선의지(의지의 자율성을 자신의 행위의 준칙으로 삼아서 행위하려는 의지)이지

않으면 안 된다. 선험적 종합명제로서의 정언명법의 증명 문제는 형식상 이론적 인식과 마찬가지로 이 두 세계와 두 의지의 결합 관계가 어떻게 하나의 행위에서 종합되는지를 선험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며, 그 종합의 원리는 의지의 자율성이다. 선의지는 자신 안에 정언명법을 내포하고 있는 선험적 종합 자체이며, 선의지로서의 선험적 종합의 명제적 표현이 정언명법의 정식들이다. 만일 종합의 원리로서의 의지의 자율성에서 선의지를 제외시키게 되면, 페이튼이 지적하듯이, 칸트의 증명(연역)은 실패하게 된다.¹⁹⁾ 왜냐하면 선의지를 배제한 의지의 자율성만으로는 이성적 행위자가 필연적으로 자율성의 원리에 따라서 행위한다는 것, 즉 감성적 욕망에 대한 명법의 강제적 구속력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칸트의 의지의 자율성 개념에는 이미 선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도 마찬가지인데, 칸트의 증명은 이런 이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종합의 원리로서의 의지의 자율성에 선의지가 없으면 두 세계(예지계와 감성계)의 존재는 분열된 세계로 존재할 것이며, 두 세계에 각각 속하는 의지(자유 의지와 감성적 욕망 의지 또는 주체)는 분열된 자아로 남게 된다. 양자는 어떤 경우에도 상호 영향 관계에 놓일 수가 없게 되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천적 종합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칸트가 “의지의 자율성은 의지가 자신에게 (의욕의 대상이 갖는 하등의 성질과 독립해서) 하나의 법칙인 의지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준칙이 그 의욕에 있어서 보편법칙이 되도록 선택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Gr.*, 74-75)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선택하는 의지의 자율성은 (그런 의지를 소유한 행위 주체의 관점에서는) 선의지가 아니고 달리 무엇일 수 있는가!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의지의 자유로서의 자율성이란 “자기 자신이 법칙이 되는 의지의 속성”(*Gr.*, 81)이라는 칸트의 정의에 따를 경우, 의지의 자율성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갖는 고유한 성질이 선의지인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칸트 자신도 언급하고 있듯이, 정언명법의 정식들은 “선

19) H. J. 페이튼, 『칸트의 도덕철학』, pp. 349-350.

의지의 정식”(Gr., 71)들이라 할 수 있다.

6. 나오는 글 : 내적 문제와 남은 문제들

지금까지의 고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허용한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좌우하는 선험적 종합명제를 당위로서의 실천적 인식을 표현하는 정언명법의 정당화 문제로 정립한다. 또한 정언명법이 선험적 종합명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지의 자율성과 선의지를 두 세계와 두 의지의 종합 원리로 삼는다. 종합의 원리로서 의지의 자율성은 선의지가 갖는 순수한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며, 선의지는 의지의 자율성을 도덕성의 원리로 삼고 있는 인간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정언명법의 정식들 역시 ‘선의지의 정식’들 내지는 선의지의 명제적 구체화에 다름 아니게 된다. 칸트가 왜 『정초』의 시작을 의무 개념과 함께 일상적 도덕 의식 속에 들어 있는 선의지에 대한 선언적 진술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도덕형이상학을 정초하기 위한 정언명법의 정당화의 백미를 의지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해명으로 마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칸트는 “절대적으로는 선하지 못한 의지가 자율성의 원리에 대해 갖는 의존의 관계는 구속성이다. 그러므로 구속성이란 신성한 존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구속성에서 나오는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고 한다.”(KpV, 74)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의무가 의식된다는 것은 곧 한마디로 선험적 종합의 원리로서 의지의 자율성과 선의지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현상이다. 아이슬러가 지적하듯이, “자율성은 도덕성의 기초이며,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자유에 대한 증언이다.”²⁰⁾ 심지어 카르노와 같은 이는 『정초』에서 처음으로 명백하게 알려진 자율성의 원리를 칸트의 두 번째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로 특징짓기도 한다.²¹⁾ 그러므로 도덕성

20) R. Eisler, *Kant-Lexikon*, Hildesheim, 1961, p. 54.

21) B. Carnois, *La Coherence de la Doctrine Kantienne de la Liberte*, Editions du Seuil, Paris, 1973, p. 79.; H. E. Allison, “Practical and Transcendental Freedom

의 원리로서의 자율성의 원리는 보편화가능성의 원리처럼 단순히 하나의 ‘원리’, 즉 원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²²⁾ 무엇보다도 칸트에 있어서 자율성은 “도덕적 주체가 도덕법칙에 대해서 갖는 일정한 관계로서 도덕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전제”²³⁾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칸트의 선형적 종합명제로서의 정언명법의 증명은 의지의 자율성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했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이 의지의 자율성은 그 직접적인 증명이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어떻게 해서 선형적인 실천적 종합명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연적인가 하는 과제의 해결은 더 이상 도덕형이상학의 한계 안에 있지 않다.”(*Gr.*, 80) 칸트에게 자유의 이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지의 자율성의 원리는 곧 도덕법칙을 의미한다.(*Gr.*, 84) 이 말은 이 원리의 실재성과 객관적 필연성, 그리고 도덕법칙 자체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이처럼 의지의 자율성이 단지 하나의 전제에 불과한 것이라면, 선의지가 유의미한 도덕적 경험인지도 불투명해진다. 그런 점에서 선의지의 실재성을 확신하는 칸트로서는 그 같은 도덕적 경험의 가능성의 원천인 의지의 자율성을 전제하고 이로부터 정언명법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려 했던 것이다. 비록 칸트가 저 과제 해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다만 직접적 불가능성에 대한 고백일 뿐이다. 왜냐하면 칸트는 자신이 시도한 간접적 증명만으로도 거부할 수 없는 선의지의 실재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칸트가 그랬듯이 이 전제를 받아들여서 칸트가 규정한 선형적 종합명제의 증명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명제(정언명법의 정식들)의 객관적 타당성과 필연성은 이론적 인식에서와 달리 검증이 불가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in *Kant-Studien* 73, 1982, p. 271 각주 2. 여기서 엘리슨은 심지어 칸트의 윤리 이론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 자율성 원리의 발견은 일대 전환점을 이룬다고 평가한다.

22) L. W. Beck,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p. 122 참조.

23) A. Haardt, “Die Stellung des Personalitätsprinzips in der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und in der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in *Kant-Studien* 73, 1982, p. 166.

능하다. 다시 말해 실제로 도덕판단과 도덕적 경험의 관계에서 현실적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척도가 되어야 할 도덕원칙들은 선험적 종합명제로서 진술되어야 하지만, 그 원칙들이 그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일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그 명제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원칙들로 예시된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행위의 도덕적 타당성은 칸트가 했던 절차에 따라 다시금 정당화되어야 하는데, 모든 거짓말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만일 이 점이 옳다면, 이 같은 경험적 확인 불가능성은 선험적 종합명제라는 사실만으로는 정언명법의 객관적 타당성만이 아니라 실천적 필연성을 확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그것은 불가피하게 내재적 정당화로 한정된다. 하지만 도덕적 경험의 현상학에 비견될 수 있는 준칙 중심의 칸트의 윤리학을 고려할 때, 경험 혹은 관찰 불가능성과 같은 약점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이 같은 한계는 내외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 내재적 정당화는 자기 정당화로 귀착되고 만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같은 자기 정당화는 중국에는 거짓말에 대한 칸트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테면 ‘무고한 생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도덕원칙을 선험적 종합명제로 간주하게 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 같은 추론은 우리가 칸트의 도덕이론을 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만일 그 가능성에 대한 해명이 칸트의 도덕철학의 근간을 해치지 않고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칸트식의 의무론자들이 자신들에 가해지는 비판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공산도 없지 않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맹주만, 「칸트와 선의지」, 『철학탐구』 제17집, 중앙철학연구소, 2005.
- _____, 「칸트의 행복주의 비판과 도덕적 문화론」, 『칸트연구』 제11집, 한국 칸트학회, 2003.
- _____, 「칸트의 이성비판과 포스트모던 칸트」, 『이성과 비판의 철학 - 칸트와 독일관념론을 중심으로』, 강순전 외, 철학과현실사, 2006.
- 문성학, 「칸트 윤리학에서 ‘실천이성의 사실」」, 『칸트 윤리학과 형식주의』,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 바움가르트너, H.M.,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읽기』, 임혁재·맹주만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4.
- 칸트, I.,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논기』, 이원봉 옮김, 책세상, 2002.
- _____,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 _____, 『실천이성비판』, 최재희 역, 박영사, 1975.
- _____,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아카넷, 2007.
- 페이튼, H. J., 『칸트의 도덕철학』, 김성호 옮김, 서광사, 1988.
- Allison, H. E., “Practical and Transcendental Freedom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in *Kant-Studien* 73, 1982.
- Aune, B., *Kant's Theory of Morals*, Princeton/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Baumgartner, H. M.,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Anleitung zur Lektüre*, 2. durches. Aufl., Freiburg/München: Verlag Karl Alber, 1988.
- _____,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 Ein Grnundbuch der modernen Philosophie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8.
- Beck L. W., *A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Döring, W. O., *Das Lebenswerk Immanuel Kants*, Hamburg: Hamburger

- Kulturverlag, 1947.
- Eisler, R., *Kant-Lexikon*, Hildesheim, 1961.
- Guyer, P., “The Possibility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in *The Philosophical Review* 104, No. 3, 1995.
- Haardt, A., “Die Stellung des Personalitätsprinzips in der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und in der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in *Kant-Studien* 73, 1982.
- Hardwig, J., “Action from Duty But Not in Accord with Duty,” in *Ethics* 93, 1983.
- Höffe, O. (hrsg.), *Immanuel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Berlin: Akademie Verlag, 2002.
- Kant, I., *Werkausgabe in zwölf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68.
- Konhardt, K., *Die Einheit der Vernunft. Zum Verhältnis von theoretischer und praktischer Vernunft in der Philosophie Immanuel Kants*, Königsstein/Taunus, 1979.
- Krüger, G., *Philosophie und Moral in der kantischen Kritik*, Tübingen, 1967.
- Paton, H. J., *The Categorical Imperative: A Study in Kant's Moral Philosop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8.
- Sullivan, R. J., *An introduction to Kant's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Wood, Allen W., *Kant's Eth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Eine Interpretation vom kategorischen Imperativ als einem synthetischem Satz a priori bei Kant

Joo-Man Maeng · Hyeong-Joo Kim

Das Hauptthema der vorliegenden Studie ist eine Interpretation von kategorischen Imperativ als einen synthetischen Satz a priori bei Kant. Kant schreibt daß Kategorische Imperativ dadurch möglich ist, daß die Idee der Freiheit mich zu einem Glied einer intelligibelen Welt macht, wodurch, wenn ich solches allein wäre, alle meine Handlungen der Autonomie des Willens jederzeit gemäß sein würden, da ich mich aber zugleich als Glied der Sinnenwelt anschau, gemäß sein sollen, welches kategorische Sollen einen synthetischen Satz a priori vorstellt, dadurch, daß über meinen durch sinnliche Begierden affizierten Willen noch die Idee ebendesselben, aber zur Verstandeswelt gehörigen, reinen, für sich selbst praktischen Willens hinzukommt, welcher die oberste Bedingung des ersten nach der Vernunft enthält; ohnegefähr so, wie zu den Anschauungen der Sinnenwelt Begriffe des Verstandes, die für sich selbst nichts als gesetzliche Form überhaupt bedeuten, hinzu kommen, und dadurch synthetische Sätze a priori, auf welchen alle Erkenntnis einer Natur beruht, möglich machen.

Nach Kant ist der kategorische Imperativ ein synthetischer Satz a priori, sein Prinzip der a priori Synthesis die Autonomie des Willens als oberstes Prinzip der Sittlichkeit und die Gesetz der Pflicht. Nun folgt hieraus notwendig, daß dieses Prinzip der Synthesis enthält den Begriff des guten Wille, dadurch mithin alle kategorische Imperative die Formel des guten Wille sind. Aber die Autonomie des Willens setzt den Idee der Freiheit voraus. Also wir könnten seine Realität und objektive

Notwendigkeit nicht für sich beweisen. Trotzdem wenn wir setzen die Freiheit des Wille voraus, Wir können sagen, daß die Autonomie des Willens und ein guter Wille sind das Prinzip der Synthesis, denn das den kategorischen Imperativ als einem synthetischem Satz a priori möglich macht. Das moralische Sollen ist also eigenes notwendiges Wollen als Gliedes einer intelligibelen Welt und das Subjekt des guten Wille, und ein synthetischer Satz a priori.

Key word: Kant, kategorische Imperativ, ein synthetischer Satz a priori, die Autonomie des Willens, guter Wille

맹주만 e-mail: maengjm@cau.ac.kr

투 고 일	2009년 5월 06일
심 사 일	2009년 5월 16일
게재확정	2009년 5월 19일